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190
----------	-------

발의연월일 : 2026. 9. 8.

발 의 자 : 박해철 · 채현일 · 전은수
임호선 · 곽상언 · 이재강
김남희 · 김원이 · 박 정
정태호 의원(10인)

제안이유

하천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중요한 공적 자원으로 적절한 보전과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수적이나, 무단 점용 및 불법 시설물 증가로 하천의 공공성이 훼손되고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정부는 하천 내 불법 점용 및 불법 영업행위 등에 대해 관리 단속과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나, 위반행위를 통해 얻는 불법 이익이 변상금 등 현행법에 따른 행정 처분 비용을 크게 상회하여 위반자의 자진 시정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불법 점용에 대한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는 조항이나 과징금 부과 근거가 부재하고, 일부 국가하천의 경우 행정조치 주체(유역 · 지방환경청)와 유지 · 보수 주체(시 · 도지사)가 상이하여 불법행위 적발 시 신속하고 실질적인 조치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무허가 불법 점용 등으로 취득한 사적 이익을 적극 환수할 수

있도록 과징금 제도를 신설하고, 원상회복 명령 권한과 행정조치 주체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하천관리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하천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무허가로 하천을 점용한 자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근거를 마련함
(안 제48조제2항 신설).
- 나.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수입금의 귀속 근거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마련함(안 제65조제2항 신설).
- 다. 불법 점용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그 부과주체를 명확히 함(안 제86조의2 신설).
- 라. 국가하천의 유지보수 담당기관을 하천관리청으로 보아 이행강제금 부과 주체를 명확히함(안 제99조제1항 개정).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 제목 “(원상회복의무)”를 “(원상회복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하천관리청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한 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3조제1항 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6항에 따라 하천의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기관을 하천관리청으로 본다.

제65조의 제목 “(부담금의 귀속)”을 “(부담금 등의 귀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86조의2 및 제99조에 따라 징수하는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하천관리청인 하천에서 생긴 것은 국가의 수입으로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외의 하천관리청이 관리하는 하천에서 생긴 것은 해당 하천관리청이 속하는 시·도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제27조제6항에 따라 하천의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의 수입으로 한다.

제8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6조의2(불법점용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① 하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관련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33조제1항 전단에 따른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한 자
2. 하천점용허가를 받았으나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
4.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홍수관리구역에서 해당 행위를 한 자

②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과징금의 납부 방법에 관하여는 제37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로, “점용료등과 변상금”은 “과징금”으로 본다.

④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 등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내지 아니한 과징금의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⑥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독촉으로 지정된 기간 내에 과징금과 제5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⑦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동일한 위반행위로 제94조부터 제9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금 또는 제37조에 따른 변상금이 부과된 경우에는 그 액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에서 공제한다.

⑧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제66조에 따른 하천의 유지·보수 외의 용도로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제1항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등에 관하여는 제27조제6항에 따라 하천의 유

지·보수를 담당하는 기관을 하천관리청으로 본다.

법률 제21471호 하천법 일부개정법률 제99조제1항 중 “제48조제1항”을 “제48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의 경우에는 제27조제6항에 따라 하천의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기관을 하천관리청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행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 전부터 행하여 이 법 시행 당시 계속 중인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에 새로이 행한 위반행위로 본다.

제3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제9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8조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8조(원상회복의무) ① (생략) <신설> ② ~ ④ (생략)	제48조(원상회복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하천관리청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한 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3조제1항 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6항에 따라 하천의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기관을 하천관리청으로 본다. ③ ~ ⑤ (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
제65조(부담금의 귀속) ① (생략) <신설>	제65조(부담금 등의 귀속) ① (현행과 같음) ② 제86조의2 및 제99조에 따라 징수하는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하천관리청인 하천에서 생긴 것은 국가의 수입으로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외의 하천관리청이 관리하는 하천에서 생긴 것은 해당 하천관리청이 속하는 시·도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② (생략)

<신설>

제27조제6항에 따라 하천의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의 수입으로 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86조의2(불법점용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① 하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관련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33조제1항 전단에 따른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한 자

2. 하천점용허가를 받았으나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

4.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홍수관리구역에서 해당 행위를 한 자

②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과징금의 납부 방법에 관하여는 제37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로, “점용료등과 변상금”은 “과징금”으로 본다.

④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 등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내지 아니한 과징금의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⑥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독촉으로 지정한 기간 내에 과징금과 제5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⑦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동일한 위반행위로 제94조부터 제9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금 또는 제37조에 따른 변상금이 부과된 경우에는 그 액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에서 공제한다.

법률 제21471호 하천법 일부개정
법률

제99조(이행강제금) ① 하천관리
청은 제48조제1항에 따른 원상
회복 명령이나 제69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원
상회복 명령이나 조치명령에서
정한 시정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1천만원 이
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단서 신설>

⑧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은 제66조에 따른 하천의 유지
· 보수 외의 용도로 이를 사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등
에 관하여는 제27조제6항에 따
라 하천의 유지·보수를 담당하
는 기관을 하천관리청으로 본
다.

법률 제21471호 하천법 일부개정
법률

제99조(이행강제금) ① -----
--- 제48조제1항 및 제2항---

다만,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의 경우에는
제27조제6항에 따라 하천의 유
지·보수를 담당하는 기관을 하
천관리청으로 본다.

② ~ ⑧ (생략)

② ~ ⑧ (현행과 같음)